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응권이 인정되는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 확대〉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18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대응권이 인정되는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 확대 ...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27.
3. 회 부 일 : 2024.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함)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인 국민과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만 정보주체의 거부권 등을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

공지능을 활용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닌 어느 정도 사람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자동화된 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 제1항).

☐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거부권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적용 대상을 현행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서 ‘자동화된’ 결정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제1항).

– 3 –

현행	개정안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으로, 현재 기업의 인사·채용 부문, 의료 부문, 금융 부문 등에서 활용되고 있고,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

○ 자동화된 결정은 사람이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차별, 권한 남용 등의 위험을 감소시켜 의사결정 과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 시간의 단축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되나²⁾,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한국인터넷진흥원, 「GDPR 가이드라인 번역본(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2017

수집·분석 및 평가 대상이 된 개인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기존 사회적 편향이 반영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에 차별이나 편향이 발생³⁾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개정)은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으로서 정보주체에게 거부권과 설명 등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음(법 제37조의2).

- 현행법은 모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설명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거부권은 자동화된 결정이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규정에 의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 등을 위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⁴⁾.

3) 구글의 광고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고소득 직종의 직업 광고를 제시한 것이나, 아마존이 활용하려던 채용 시스템이 ‘여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지원서를 채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폐기된 사례가 있으며, 미국에서 튜터링 서비스의 가격 책정 알고리즘이 백인보다 아시아인에게 2배 가까운 요금을 책정한 사례 등이 있음. (이상용·이혜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의 규율,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10호, 2024. 1.)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현행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

정보 수집 사유 (자동화된 결정의 사유)	거부권 (법 제37조의2제1항)	설명권 (법 제37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호 ·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 -공공기관 소관 업무 수행 -정보주체 · 제3자의 급박한 생명 · 신체 · 재산의 이익 달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일시적 수집	거부권 인정 ※ 단,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함	설명권 인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	거부권 불인정	

□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만 정보주체의 대응권을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도 정보주체가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먼저, 보호위원회 고시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⁵⁾은 해당 결정이 인적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자동화된 결정으로 보고 있는데, 인적 개입 여부는 ‘해당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개입’을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의 개입 또는 단순 결재 등 형식적인 개입만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자동화된 결정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⁶⁾, 현재 제도 하에서도 완

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9호

제6조(거부·설명등요구에 대한 조치시 고려사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거부·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의 예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2.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하는 등 개별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지 여부
3.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린 결정으로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지 여부
4. 해당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결정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6. 다른 법률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거부·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의 예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인지 여부
2. 정보주체의 권리가 박탈되거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지 여부
3. 정보주체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4.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여부
5.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해당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2024.9., 8쪽

<일부 인적 개입이 있지만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사례>

예: 고객센터에 대한 상담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은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 육아수당 지급 취소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령 상담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의미의 인적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자동화된 결정에 해당)

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 과정에 사람의 개입 절차를 두고 있으나 그 업무량이 방대하고 부여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람의 개입이 의미 없는 수준에 그칠 정도라면 실질적 의미의 인적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전히 자동화된 결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일부 인적 개입이 있더라도 자동화된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

- 또한,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한국인터넷기업협, 은행연합회)는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에 따라 의사결정시 보조적으로 자동화된 결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를 경우 대응권이 적용되는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도 ‘오직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Regulation (EU) 2016/679, GDPR(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Article 22.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

1.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not to be subject to a decision based solely on automated processing, including profiling, which produces legal effects concerning him or her or similarly significantly affects him or her.

제22조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인에 대한 의사결정

1.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 등 본인에 관한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 취지와 함께 ① 현행 제도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 ② 정보 주체의 대응권이 인정되는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관련 산업의 위축 가능성, ③ 관련된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4